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485

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:황 희·어기구·한민수

박 정・안규백・김태년

김준형 · 차지호 · 이학영

문진석 • 박수현 • 문대림

민홍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.

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. 이러한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 이집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임.

이에 어린이집 급식시설·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·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하여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3조 등).

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와 「식품위생법」 제53조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.

법률 제202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 중 "보육교직원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"를 "급식시설·설비비, 보육교직원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 및 영양사·조리사의"로 한다.

제42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제33조제1항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급식시설·설비기준이나 영양사·조리사의 배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

제44조제4호의8 중 "경우"를 "경우(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식시설·설비기준이나 영양사·조리사의 배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급식 관리) (생 략)	제33조(급식 관리) <u>①</u> (현행 제목
	외의 부분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
	따른 급식을 위하여 교육부정
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시
	설과 설비를 갖추고 「국민영
	양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영
	양사와 「식품위생법」 제53조
	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.
법률 제20289호 영유아보육법 일	법률 제20289호 영유아보육법 일
부개정법률	부개정법률
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국가나	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
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	
른 어린이집의 설치, <u>보육교직</u>	<u>급식시설</u>
원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	•설비비, 보육교직원(대체교사
건비, 초과보육(超過保育)에 드	를 포함한다) 및 영양사·조리
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	사의
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・	
운영,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,	
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	
에 드는 비용, 제15조의4에 따	
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	

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제42조의2(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) ① 누구든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 을 지키지 아니한 자

4. ~ 9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

제44조(시정 또는 변경 명령)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이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설치·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수 있다.

<u>.</u>
제42조의2(위법행위의 신고 및
신고자 보호) ①
,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제33조제1항에 따른 급식관
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
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식시
설・설비기준이나 영양사・조
리사의 배치기준을 지키지 아
<u>니한 자</u>
4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4조(시정 또는 변경 명령)

1. ~ 4의7. (생 략) 4의8.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 지 아니한 <u>경우</u>

4의9. ~ 8. (생략)